

대전지방법원 2022. 10. 19 선고 2021나122036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2. 10. 19 선고 2021나122036 판결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9. 9 선고 2021가소4222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변론종결 2022. 9. 28.

판결 선고 2022. 10. 19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9. 9. 선고 2021가소4222 판결

주문

1.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피고는 선정자 C에게 1,483,1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10%, 피고가 90%를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선정자 C에게 1,596,656원, 원고(선정당사자) A, 선정자 D, E에게 각 950,91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

망 F는 2019. 12. 26. 사망하였는데, 선정자들[원고(선정당사자) A 포함, 이하 같다]과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이다.

나.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확정된 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

피고는 선정자들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느합1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, 이후 같은 법원 2020느합2호, 2020느합3호 기여분 심판 청구가 병합되었다.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이 2021. 1. 28.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.

결정사항

1. 피상속인 망 F가 원고로 되어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23242 손해배상(자)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승소하는 경우(일부 승소 포함)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의 60%를 청구인('피고'를 지칭한다. 이하 같다)이, 40%를 상대방('선정자들'을 지칭한다. 이하 같다)이 분할하여 지급받는다.
2.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예금 채권은 청구인을 제외한 상대방들에게 분할하는

것으로 하되, C이 1/3지분, D, A, E이 각 2/9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.

3.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서로의 기여분이 각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다.

4.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향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호간에 민사, 가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

5.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6.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[별지]

목록

1. 부동산

가. 전남 해남군 G 전 1,021m²

나. 전남 해남군 H 대 348m²

2. 예금채권

가. I조합 예금(I조합 화산지점) 14,000,000원

나. 지역K조합 예금(L조합) 5,206,440원

다. 지역K조합 출자금(L조합) 905,209원

라. 지역K조합 보증(L조합) 10,000,000원. 끝.

다. 망 F 명의 예금의 공탁과 상속인들의 수령

1) M조합은 2020. 5. 20. '망 F 명의의 정기예탁금 원리금1)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기여금 등을 주장하며 수령을 거절한다'는 이유로 피고와 선정자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탁하였다.

2020. 5. 20.	서울북부지방법원2020년 금 제2242호	피고	2,576,416원	2020. 8. 19. 수령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0년 금 제1005호	선정자 A선정자 E선정자 C	2,576,416원2,576,416원3,864,625원	2020. 5. 28. 수령2020. 5. 26. 수령	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0년 금 제643호				

2) L조합은 2020. 5. 27.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년 금 제720호로 망 F 명의 예금(이자 포함) 10,301,391원에 대하여2)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선정자 C에게 2,809,471원,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1,872,980원을 공탁하였다.

2020. 5. 27.	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0년 금 제720호	선정자 C	2,809,471원	
피고3) 피고는 2021. 4. 6. 답변서에서 공탁금 1,872,9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.	각 1,872,980원			
나머지 선정자들				

[인정근거] 일부 다툼 없는 사실, 갑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.), 을 1~4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1) 이 사건은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가사사건에 해당하므로,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.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2)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에서 선정자들과 피고는 향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호간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바, 이 사건 소송은 위 조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1)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확정된 내용과 달리 상속재산 일부가 피고에게 귀속됨에 따라 상속재산이 침해된 공동상속인인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,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.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) 조정조항에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향후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, 이 사건 소송은 조정조항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상속재산 일부가 피고에게 귀속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,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.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피고가 위 1의 다.항 기재와 같이 M조합과 L조합이 공탁한 4,449,396원(= 2,576,416원 + 1,872,980원)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확정된 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에서 M조합과 L조합이 위와 같이 공탁한 망 F의 예금은 선정자들에게 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이처럼 피고가 수령한 공탁금은 선정자들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이므로,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공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선정자 C에게 1,483,132원(= 4,449,396원 × 3/9),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988,754원(= 4,449,396원 × 2/9, 원 미만 버림)과 이에 대하여 원고(선정당사자)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,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하며, 이 부분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여야 하나,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,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선용

판사최리지

판사강병하

별지

- 1) 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의 별지 목록 제2의 가.항 기재 예금이다.
- 2) 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의 별지 목록 제2의 라.항 기재 예금이다.
- 3) 피고는 2021. 4. 6. 답변서에서 공탁금 1,872,9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.